

2025년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

□ 사업개요

- 개별 수출업체의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한 국내 초청 및 현장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출계약 성과 창출 도모
- 바이어 초청비(항공, 숙박) 지원으로 현장 상담 및 수출계약 확대

□ 지원내용

- 지원사항

구분	항공료	숙박비
지원내용	바이어 1인 국제선 이코노미 왕복 항공운임	바이어 1인 국내 체류 숙박비용
지원한도	연 1회, 실 지출비용의 80% 지원, 총 250만원 한도 (숙박비) 최대 5박, 최대 100만원 한도 내	

지원제외 대상 업체

- (1) aT지원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공모형 및 신청형(개별바이어 초청 부문) 선정업체*
* 향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 선정결과 발표 후 확정
- (2)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
- (3) 수산물·수산가공식품 수출업체
- (4) 수출업체와 자회사 또는 모회사 관계, 현지 법인인 경우
* 향후 aT 해외지사를 통한 법인 또는 자회사 관계 확인

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5년 2월 14일(금) ~ 2월 27일(목) 23:59까지
- 신청방법 :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내 신청서 접수

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→ 사업신청 → 모집공고 → 「2025년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」 선택 후 사업신청

- * 주말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가능하며, 오프라인 및 메일 접수는 불가함
- * 신청 마감일 전까지 수정·보완 가능. 단, 모집 마감일 이후 수정·보완 불가

□ 제출서류

구분	내용
필수	① 신청서(붙임1 엑셀파일 첫 번째 시트(필수)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신청서에 입력) ② 무역통계 정보제공 동의 필수 ※ 기존 미동의 업체에 한하여 제출 ③ aT One Pass(서류제출간소화)* 시스템을 통한 사업자등록증명 온라인 제출
선택	④ 초청 바이어의 2024년 수입실적 증빙(붙임1 엑셀파일 두 번째 시트 (입력)바이어 수입실적에 입력) ※ 수입실적 증빙 - 바이어사 명의의 invoice - 바이어명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-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수입실적 증빙서류 ⑤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국산원료 사용증빙 ※ 품목제조보고서 상 원재료의 원산지 표기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, 주원료의 국산 원재료의 납품확인서,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 국산원료사용 가공농식품으로 인정 ⑥ 계약이행실적 증빙 (2022년~24년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참여 수출업체 대상) ※ 기 초청 바이어와의 MOU 및 수출 계약서, 수출신고필증 등

□ 수출업체 참가 유의사항

- 업체당 바이어 초청 계획(국가, 바이어사) 변경을 1회로 한정
- * 바이어 초청 일정 및 초청 바이어(국가, 초청자), 중도포기 등 변경사항 발생 시, 변경 전 공문을 통한 지역본부 및 본사 보고 필수
- * 초청 바이어사 변경 시, 변경 바이어사 수입실적 증빙 제출 필수
- * 중도포기 시, 향후 1년 간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지원 배제

□ 선정심사 및 결과 발표

* 붙임 1.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선정기준 참고

구분	내용
선정방법	100% 계량평가를 통한 고득점순 선정
결과발표	2025년 3월 14일(금) 18:00 이후
결과발표 확인방법	수출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사업신청관리 → 선정확인

* 선정심사일 변경에 따라 결과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

□ 문의처 : aT 바이어사업부 김수연 주임(061-931-0987, syk@at.or.kr)

※ 붙임 :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선정 및 정산기준,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방법

붙임 1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선정기준

평가항목		평가 내용	평가 배점		
바이어 (50)	수출 유망 국가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략국가 바이어 초청 ① 전략시장 : 수출시장 다변화사업 전략국가 ② 신규시장 : 주력시장 외 기타 신규시장 ③ 주력시장 : 미국, 중국, 일본, 베트남, 홍콩 	20 (전략)	15 (신규)	10 (주력)
	수입규모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바이어 연간 수입규모 * 2024년 기준 수입실적 증빙 제출 	30 (USD 30만불 이상)	20 (USD 10만불 이상~30만불 미만)	10 (USD 10만불 미만)
수출업체 (50)	비대면 환경대응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출상품 K-Food Trade 등록여부 * K-Food Trade 홈페이지 가입 후 제품 등록 - 기존 회원가입 업체는 공고기간 내 최신화 필수 	10 (등록)	0 (미등록)	
	신규 · 기존 참가기업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규 참가기업 * 최근 3개년 이내 개별바이어 초청 실적이 없는 참가기업 	10 (신규 참가)	0 (기존 참가)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존 참가기업 :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- 계약이행실적 증빙 제출 여부¹⁾ 	10 (제출)	0 (미제출)	
	상담희망 품목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농가소득 연계 품목 여부 ① 신선농산물 ② 국산원료사용 가공농식품 * 품목제조보고서²⁾ 상 주원료로 국산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* ③ 기타가공식품(품목제조보고서가 없는 경우)³⁾ 	30 (신선)	20 (가공)	10 (기타가공)
가점	· 사업성과 제고				
	`23년 BKF* 수출성공사례집 게재 업체(5점)		5		
	`24년 「K-Food+ 수출탑」 수상업체(5점)		5		

※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제출 필수

※ 초청 바이어는 2024년(2024.01.01.~2024.12.31.) 중 수입실적이 있어야 하며, 수출업체와 자회사 또는 모회사 관계, 현지 법인의 경우 선정 제외

※ 2025년 수출시장 다변화사업 전략국가(20개국) : 캐나다, 호주, 필리핀, 네덜란드, 영국, 싱가포르, 대만, 몽골, 사우디아라비아, 칠레, 튀르키예, 폴란드, 쿠웨이트, 카자흐스탄, 멕시코, 인도, 과테말라, 라오스, 우즈베키스탄, 남아공

※ 품목제조보고서 상 원재료의 원산지 표기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, 주원료의 국산 원재료의 납품확인서,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 국산원료사용 가공농식품으로 인정

- 1) 계약이행 실적 증빙 : 계약서, 수출신고필증 등 개별바이어 초청사업을 통한 계약이행 실적 증빙
 2) 품목제조보고서 : 식품, 식품첨가물, 축산물 제조·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을 제조하고자 할 때 관할 시/군/구에 보고하는 영업자 의무사항 보고서
 3) 가공농식품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미제출 시 기타가공식품으로 분류

붙임 2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정산기준

- ※ a에서 지원하는 '우수농식품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형(바이어초청 부문) 또는 공모형 선정업체 중복지원 불가
- ※ 현금수령증, 송금내역 모바일 캡처본, 문자내역 등은 적격증빙으로 인정 불가
- ※ 결과보고서 작성 시, 식사 및 회식 사진 등 공식 상담이 아닌 사진 제출 지양 (공장 및 산지 견학, 상담 사진 등 바이어와의 상담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제출만 인정)
- ※ 바이어 초청일(최초 입국일)로부터 1개월 이내 결과보고를 원칙으로 함
- ※ 모든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요청은 12월 1주차까지 제출완료 원칙

< 신청서류 >	
기본	○ 신청서
바이어 수입규모	○ '24년 기준 수입실적 증빙(바이어사 명의의 Invoice, Packing List, B/L 등 수입신고 관련 서류 또는 해당국가에 발행한 수입실적 증빙서류) 제출 필수
< 정산서류 >	
기본	○ [필수] 결과보고서 - 공식 초청 일정별 사진 증빙 제출 필수 ○ [필수] 초청자 인적사항(①명함, ②여권 사본)
항공료	○ [필수] 항공사 발행 e티켓 ○ [필수] 항공사(혹은 여행사) 발행 인보이스(세부내역포함) ○ [필수] 지출증빙(지출일자 및 금액이 명시된 영수증 혹은 매출전표, 수표의 경우 수표 사본 및 출금내역)
숙박비	○ [필수] 호텔발행 숙박비 내역서 (투숙객명, 투숙일자별 금액 필수 포함) - 투숙객명과 초청 바이어 명이 동일한 것이 원칙이나, 수출업체 선예약으로 투숙객명이 수출업체 담당자인 경우, 해당 담당자의 재직증명서 제출 필요 ○ 여행사 발행 인보이스 * 직접 예약 건의 경우 생략 가능 ○ [필수] 지출증빙(지출일자 및 금액이 포함된 영수증 혹은 매출전표)
수출실적	○ 수출신고필증 혹은 바이어와의 MOU 계약서 - 바이어 방문(최초 상담일) 이후 발행 필수 - 계약금액 또는 MOU 체결금액 명시 및 해당 건에 대한 증빙 제출 - 정산서류 제출 시 실적이 없는 경우, 연내 보완
증빙제출 유의사항	○ 모든 정산은 수출업체가 선 집행한 후 항목별 정산기준에 맞춰 사후 정산함. ○ 공식 초청 일정별 사진 증빙 제출(공식 일정의 각 일자별 증빙 사진 1매 이상 제출) - 공장 및 산지 견학, 상담 사진 등 바이어와의 상담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제출만 인정 ○ 바이어가 직접 지출 시, 수출업체가 송금한 송금증 제출 필수 ※ 현금수령증, 송금내역 모바일 캡처본, 문자 내역 등은 적격증빙으로 승인 불가 ○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, 사본 제출 시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○ 농식품 대상 상담을 원칙으로 함(수산물·수산물 가공식품 및 농기계 관련 상담 시 정산 제외)

< 정 산 기 준 >

항공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바이어 1인 국제선 일반석(이코노미) 왕복 항공료 실비 지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경유한 경우, 출발지와 도착지(한국) 기준 탑승월 대한항공 국제선 왕복 직항 일반석(Y) 예약등급 전체(비수기, 준성수기, 성수기) 평균 운임 한도 적용 ※ 일반석(이코노미) 이외 좌석등급(ex. 일반석 플렉스, 비즈니스 등) 탑승 시, 탑승월 대한항공 국제선 왕복 직항 일반석(Y) 예약등급(Y~L석) 비수기, 준성수기, 성수기 평균 운임 한도 적용 ※ 국내 이동(항공, 기차, 버스 등)에 대한 항공료 불인정 (예시 : 인천↔제주 국내선 이동) 																		
숙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바이어 1인 숙박비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* 총 5박 이내 - 숙박내역서 및 증빙 미제출건 불인정 - 숙박비 이외 미니바, 인터넷, 세탁, 룸서비스 등은 정산 제외 - 수출업체 카드결제 시, 카드번호 뒤 네자리 증빙 제출 필요 																		
지원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산승인액(적격증빙으로 승인된 항공료 및 숙박비 지출액)의 80% 정산 																		
적용환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바이어가 현지화로 선지출 후 수출업체가 송금한 경우, 기준환율적용 정산인정액과 수출업체 원화 기준 송금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인정함 - [기준환율적용액] 항공료, 숙박비 지출이 현지화로 이뤄졌을 경우, 지출일 기준 송금 보낼 때 환율(하나은행 최초고시) 적용한 금액을 말하나, 지출일이 불명확할 경우 입국일 기준 송금 보낼 때 환율(하나은행 최초고시)을 적용함 - [송금액] 송금액은 송금증 등 증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원화 송금액을 말하며, 원화 기준 송금액이 불명확할 경우 송금액은 송금일 기준 송금 보낼 때 환율(하나은행 최초고시)을 적용함 - (예시) 바이어가 6/1 USD 1,000에 해당하는 항공권을 선구매하고, 8/1 수출업체가 USD 1,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기준환율적용 정산승인액 < 송금액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d> <td style="width: 45%;">6/1 기준환율적용 정산인정액</td> <td style="width: 45%;">8/1 송금액</td> </tr> <tr> <td>환율</td> <td>1,300원/USD</td> <td>1,400원/USD</td> </tr> <tr> <td>금액</td> <td>USD 1,000*1,300원 = 130만원</td> <td>USD 1,000*1,400원 = 140만원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2) 기준환율적용 정산승인액 > 송금액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d> <td style="width: 45%;">6/1 기준환율적용 정산인정액</td> <td style="width: 45%;">8/1 송금액</td> </tr> <tr> <td>환율</td> <td>1,400원/USD</td> <td>1,300원/USD</td> </tr> <tr> <td>금액</td> <td>USD 1,000*1,400원 = 140만원</td> <td>USD 1,000*1,300원 = 130만원</td> </tr> </table> ○ 수출업체가 현지화로 지출한 경우도, 지출일 기준 송금 보낼 때 환율(하나은행 최초고시)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, 지출일이 불명확할 경우 입국일 기준 송금 보낼 때 환율(하나은행 최초고시)을 적용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수출업체 현지화 카드결제 시, 카드 결제 내역 증빙 상 환율 적용 금액 인정 	구분	6/1 기준환율적용 정산인정액	8/1 송금액	환율	1,300원/USD	1,400원/USD	금액	USD 1,000*1,300원 = 130만원	USD 1,000*1,400원 = 140만원	구분	6/1 기준환율적용 정산인정액	8/1 송금액	환율	1,400원/USD	1,300원/USD	금액	USD 1,000*1,400원 = 140만원	USD 1,000*1,300원 = 130만원
구분	6/1 기준환율적용 정산인정액	8/1 송금액																	
환율	1,300원/USD	1,400원/USD																	
금액	USD 1,000*1,300원 = 130만원	USD 1,000*1,400원 = 140만원																	
구분	6/1 기준환율적용 정산인정액	8/1 송금액																	
환율	1,400원/USD	1,300원/USD																	
금액	USD 1,000*1,400원 = 140만원	USD 1,000*1,300원 = 130만원																	

붙임 3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방법

수출지원사업 무역통계제공 동의서 징구 간소화 서비스

□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목적

- 제공목적 :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 지원사업 관리
- 증명서 발급기관 : (재)한국무역통계진흥원
- 제공항목 : 신고번호, 신고일, 수리일, 선적일, 수출자, 화주, 제조자, 품명(HS CODE) 수출실적[(중량, 수출금액(\$, ₩)], 수입국, 운송방법, 선적항, 재수입여부 등 무역통계자료
- 비용부담 :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

□ 방법 : ① <http://www.trass.or.kr/at.jsp> 접속 → ② 사업자번호로 동의 여부 확인 → ③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동의

aT 수출지원사업
무역통계제공
동의서 제출
간소화서비스

aT수출지원사업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인 무역통계제공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제출 기능을 적극 활용하셔서 대기발송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.

Step1

<http://www.trass.or.kr/at.jsp>
접속

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
Korea Agro-Fisheries & Food Trade Corporation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동의서 제출 업체 확인

사업자번호 10자리를 입력해 주세요. (필수)

확인하기

Step2

사업자번호로 **동의여부 확인**

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
Korea Agro-Fisheries & Food Trade Corporation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동의서 제출 업체 확인

1068200944

확인하기

사업자 번호 106-02-00944
동의여부 **대동역**

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동의

사업자 공동인증서가 없다면.

30% OFF

인증서 신청부터 관리까지
KTNET 공동인증센터

[오프라인 동의] 우편 접수

제출처
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35, 4층,
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

제출서류
1. 정보자료 동의서 **무의 다운로드**
2. 인감증명서(공본)
3. 사업자 등록증(사본)

Step3

사업자 공동인증서로 **동의**

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
Korea Agro-Fisheries & Food Trade Corporation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동의서 제출 업체 확인

1068200944

확인하기

사업자 번호 106-02-00944
동의여부 대동역

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동의

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

수신 : (재)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귀중
당사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, 통관자료 등 귀 업체로부터 해당와 같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.

구분	범위
제공목적	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지원사업관리
증명서 발급기관	한국무역통계진흥원
제공항목	신고번호, 신고일, 수리일, 선적일, 수출자, 화주, 제조자, 품명(HS CODE), 수출실적(중량, 수출금액(\$, ₩)), 수입국, 운송방법, 선적항, 재수입여부 등 무역통계자료
조약기간	2018년 1월 1일 ~ 별도 조치시까지
비용부담	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

동의합니다. **사업자 공동인증 동의**

* 사업자 공동인증서만으로 간편하게 동의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